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3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한규·허성무

민병덕 · 임오경 · 황명선

한병도 • 이수진 • 윤종군

김종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.

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,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고자하며, 이에 맞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고자 함(안 제76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434호),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8433호)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435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 제목 "(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)"을 "(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"을 "거주자가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기부한 정치자금(「정치자금법」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후원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6조(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6조(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) ① 거주자가 「정치자금 및 증여세 특례) <삭 제> 법」에 따라 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를 포함한다)에 기부한 정치 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 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 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사업자인 거주 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 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 입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 ② 거주자가 「정치자금법」에 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 따라 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

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

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

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제4호,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.

함한다)에	기부한	정치자금
(「정치자금	법」 저	]24조의2에
따른 정치후	5원권을	포함한다.
이하 이 조여	에서 같다	<u>})</u>
③ <u>제2항</u>		